

08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국가회계팀 이소정, 최지영 회계사



1 개요

1. 일시 및 장소 : '15.12.8.(화) ~ '15.12.11.(금) / 캐나다 토론토
2. 참석자: IPSASB 위원 및 참관인(GASB, XR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참고〉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회계기준임
- IPSAS를 제정하는 기구는 전 세계적인 공인회계사 연합체인 IFAC(국제회계사연맹) 산하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임

2 주요 논의사항

이번 IPSASB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익과 비교환비용(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2.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3. 유산자산(Heritage Assets)

3 논의결과 요약

이번 IPSASB Meeting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과 비교환비용(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IPSASB는 수익과 비교환비용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에 다루었던 사항과 향후 이 프로젝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수익과 비교환비용 관련 인터뷰

IPSASB는 수익과 비교환비용 관련 이슈에 대해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의 담당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관할지역의 비교환수익과 비용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이러한 비교환수익과 비용을 인식, 측정 및 공시하는 데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등을 주요 질문사항으로 담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익과 비교환비용 관련 주요 설문조사 결과

Q1. 비교환수익과 비용이 응답자들의 관할지역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Taxes) • 보조금(Grants) • 교부금(Subsidies) • 현물출자(In-kind contributions) • 이전(transfers) • 부지, 재화, 재고(Premises, goods, inventory) • 특정 프로그램 관련 자금제공(Funding to partners for specific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 또는 공공서비스(Public health or public services) • 용자금(Concessionary loans) • 기부금(donations) • 벌금(Fines) • 자발적기부(Voluntary contributions) • 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s) • 면허료(license fee)
Q2. 비교환수익과 비용을 인식, 측정 및 공시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비교환수익과 관련된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년에 걸쳐 받는 조건인 경우 인식 시기 • 납세항목의 인식과 발생주의항목의 측정 • 현금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 항목의 처리 • 교환과 비교환거래의 구분 • 기준이 없는 기부 조약에 대한 수익과 부채의 측정 및 인식 	
비교환비용과 관련된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의 측정 • 몇 년에 걸쳐 지급하는 비용의 처리 • 용자, 채무면제 및 조건부 용자의 처리 • 유상계약의 정의 	

설문조사에 대해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일반화 될 수는 없으나 IPSASB에서는 비교환거래 관련 지침 작성 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2) 교환/비교환 구분 접근법(Exchange/Non-Exchange Classification Approach)

교환/비교환 구분 접근법은 자원 공급자의 회계처리 및 공시 관련 지침의 개선과 자원 수급자의 현행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접근법의 장점은 공공부문 재무제표 작성자들에게 익숙한 방법이라는 것과, 공공부문실체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환 및 비교환거래를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담당자들은 이 접근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PSASB는 교환/비교환 구분 접근법의 장단점과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교환/비교

환 구분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비교환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환거래 지침을 참고하여 비교환거래에 대해 측정할 수 있도록 IPSAS 23(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IPSASB는 이 외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다루기로 하였다.

(3) 이행의무 접근법(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IPSASB는 IFRS 15(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행의무*의 정의를 공공부문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PSASB는 수익거래를 3가지**로 구분하여 이행의무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 이행의무의 주요 특징: ① 외부에 거래당사자가 존재, ② 재화 또는 서비스 통제권의 이전, ③ 강제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로부터 발생

** Category A: IFRS 15의 접근법이 적용 가능한 거래, Category B: IFRS 15의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거래, Category C: IFRS 15의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거래

IPSASB는 IPSAS 9(Revenue from Exchange Transactions)와 IPSAS 11(Construction Contracts)의 일부 교환거래가 Category A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IFRS 15 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도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IPSASB는 Category B에 포함된 거래를 고려하는데 신중했는데, 그 이유는 IFRS 15의 접근법의 수정이 모델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IPSASB는 Category B에 해당되는 거래 중 자본보조(Capital Grants)와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s)에 대해 검토하였다. IPSASB는 검토한 거래에 대해 IFRS 15 범위의 연장선상에 해당되나, IFRS 15의 접근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IPSASB는 Category C의 거래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IFRS 15 접근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IPSAS 23과 같은 기준이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이번 IPSASB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배출권거래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작성 및 보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PSASB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ETS)의 운영자와 참여자의 회계처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IASB와의 협업을 강조한 바 있는데, IASB 측의 배출권거래제 프로젝트(PPMs: Pollutant Pricing Mechanisms) 일정이 2016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IPSASB 측 배출권거래제 프로젝트 일정의 중단 또는 연기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조사연구진(Staffs)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방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배경문건(Background Paper)을 작성하여 IPSASB에 제출하였으며, IPSASB는 배경문건을 IPSASB와 IASB의 공동문서의 형태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배경문건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9월 회의에 이어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자가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 직접규제방식(Command and control), 결과기반 금융지원(Results-based financing),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ETS) 이상 4가지

3. 유산자산(Heritage Assets)

IPSASB는 유산자산(Heritage Assets)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보고서(CP)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유산자산이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유산자산에 대한 보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PSASB는 유산자산이 개념체계상 자산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유산자산이 ‘자원(resource)’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산자산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수한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유산자산에 대한 공공부문의 보존의무를 포괄적 보존의무(소유여부와 무관한 보존의무)와 일반적 보존의무(보유중인 유산자산에 대한 보존의무)로 구분하고 포괄적 보존의무는 비교환거래의 요소를, 일반적 보존의무는 교환거래의 요소를 가진다고 보았다.

4 맺는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4분기 IPSASB Meeting의 참관을 통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고, 국가회계 관련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PSASB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비교환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최근 종결된 수탁과제와 관련된 배출권거래제의 논의사항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다.